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시설물 운영세칙

제정 2009. 4. 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이하 “학술림”이라 한다) 내의 시설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적용 범위) 본 세칙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남부학술림 : 추산시험장, 연곡관리소, 직전관리분소, 심원관리분소
2. 태화산학술림 : 자연자원연구동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장이 총괄한다.

제4조 (이용 대상) 시설물의 이용은 교육 및 실습, 연구, 세미나, 교직원의 후생복지와 기타 학술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제공한다.

제5조 (시설물 이용) 시설물의 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생 교육 및 실습
2.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 및 세미나
3. 교직원의 후생복지
4. 기타 학술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신청 및 허가) 1. 학술림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30일 전에 학술림 홈페이지(<http://uf.snu.ac.kr>)를 통하여 이용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술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술림은 이용신청자에게 이용 허가 여부를 이용신청자의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이용 허가의 우선순위)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허가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본교의 교육, 실습 및 연구 활동에 있으며 기타 우선순위는 학술림장이 결정한다.

제8조 (이용허가의 거부 등) 학술림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물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내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자가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의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학술림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 (이용허가 취소 등) ① 학술림장은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득한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2. 허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3. 이 세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시설물 내의 이용규칙을 위반할 경우
5. 갑작스러운 행사발생,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학술림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자는 이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과과정에 의한 교육 및 실습을 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이용료의 할인을 받을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이용신청서 작성 시 교과과정에 의한 교육 및 실습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의 납부·반환) 1. 이용자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는 이용 종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세칙 제9조의 1항 5호에 의한 경우
2. 이용예정일 전에 이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학술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이용료의 관리·운영) 이용료의 관리 및 운영은 법인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운영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1.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시설물 내의 시설, 집기, 기자재 등을 분실·훼손한 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 이용을 전후하여 학술림 직원의 안내에 따른다
2. 화기는 학술림에서 제공한 것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18호, 2009.4.1.)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